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2호서식] <개정 2018. 5. 17.>

(앞쪽)

폐기물 최종처분대장

(① 폐기물의 종류:)

(단위: 톤)

연월일	② 위탁내용						③ 처분내용		보관량	결재	
	위탁업소명	위탁업소 소재지	상 태	위탁량	운반업소명	위탁량 누계	처분량(매립)	처분량 누계			

364㎜×257㎜[백상지 80g/㎡]

작성방법

1. ①란은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,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.
2. ②란 및 ③란은 폐기물을 수탁하거나 최종처분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되, 위탁량 및 처분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,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.
3. ②란 중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고, 운반업소명란에는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는 "배출"로, 수집·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는 수집·운반업자명을, 최종처분업자 스스로 수집·운반한 경우는 "자가"로 적습니다.
4. ③란은 매립처분량을 적습니다.
5. 양은 무게단위인 톤(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)으로 적고, 성질·상태는 고체상태이면 "고상"으로, 액체상태이면 "액상"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